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산안·결산 및 사업별 설명자료 등 게재〉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91호)

2024. 10.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한규 · 이원택 · 장철민 · 김태년 · 강훈식 · 백혜련
정진욱 · 박홍배 · 이재정 · 이건태 · 박상혁 · 박정현
모경종 · 강준현 · 박희승 · 서미화 · 신정훈 · 양부남
위성곤 · 손명수 · 김영환의원(21인)

2. 제 안 일 : 2024. 9. 25.

3. 회 부 일 : 2024. 9. 26.

※ 의안번호 : 429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정책처의 직무로 예산안 · 결산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등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는 각 부처를 소관하는 기관에만 제공되거나 부처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제공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공개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 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기금운용계획 등 포함)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예산안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처장은 국가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 등을 포함한다)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¹⁾에 따라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연구 및 분석,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거시경제동향 분석·전망 및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및 결산 분석, 주요사업 분석, 재정 및 경

1)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제 전망, 조세정책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표-2]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예정) 보고서 현황

연번	보고서 명	연번	보고서 명
1	2024 경제전망	20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2	2024 대한민국 조세	21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3	2024 대한민국 경제	22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4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23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발간예정)
5	2024 대한민국 재정	24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발간예정)
6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5	정책펀드 종합 평가(발간예정)
7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26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발간예정)
8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27	기후대응 R&D 사업 평가(발간예정)
9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	28	지역 산업클러스터 사업 평가(발간예정)
10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	29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발간예정)
11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30	기후대응기금 평가(발간예정)
12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31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발간예정)
13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32	지방대학 육성 사업 평가(발간예정)
14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33	2024~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발간예정)
15	농업·농촌 공익기능직불 사업 평가	34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발간예정)
16	대한민국 사회보험	35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발간예정)
17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36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발간예정)
18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37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발간예정)
19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38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발간예정)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포함)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 등에 관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해 총괄분석, 재정총량 분석, 위원회별 분석 등을 실시하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이후에는 확정예산의 주요내용, 그간 예산안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간, 공개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공개대상인 “사업별 설명자료”에 「국가재정법」 제9조²⁾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개하는 사업별 설명자료, 같은 법 제34조³⁾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국가회계법」 제15조의2⁴⁾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되는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가 해당될 수 있는데, 이들 자료 모두 정부가 생성하는 것이므로 원저작자인 정부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른 사업별 설명서⁵⁾ 등 부속서류,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기금운용계획은 현재 의안정보

2)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⑤ 제4항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4)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5)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